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밸류웨이40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15. 7. 17.

□ **정정 사유**:

- (1) 클래스 추가 : Cp-E, Cp2, Cp2-F, S-P
- (2) 이익분배 방법 변경 : 평가이익 유보 → 전액 분배
- (3) 다른 자투자신탁 변경 사항 반영

□ **정정 내용**

항목	정정전	정정후
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클래스 추가	<u>Cp-E : B5416,</u> <u>Cp2 : B5417,</u> <u>Cp2-F : B5418,</u> <u>S-P : B5419</u>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클래스 추가	<u>Cp-E : B5416,</u> <u>Cp2 : B5417,</u> <u>Cp2-F : B5418,</u> <u>S-P : B5419</u>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기재	<u>2015.07.17 : 클래스 추가</u> <u>(Cp-E, Cp2, Cp2-F, S-P)</u>
5. 운용전문인력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2015. 2. 28.	<u>2015. 6. 30.</u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모자형 구조	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변경 내용 반영	<u>명칭 변경 및 해지 자펀드 삭</u> <u>제</u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. 종류형 구조	클래스 추가	<u>Cp-E클래스(B5416) : 소득세</u> <u>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</u> <u>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</u> <u>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</u> <u>있으며,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</u> <u>하는 투자자</u> <u>Cp2클래스(B5417) : 근로자퇴</u>

		<p><u>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</u></p> <p><u>Cp2-F클래스(B5418) : 퇴직연금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</u></p> <p><u>S-P클래스(B5419)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
<p>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</p> <p>가. 매입</p> <p>2) 종류별 가입자격</p>	<p>클래스 추가</p>	<p>⑨ <u>Cp-E클래스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</u></p> <p>⑩ <u>Cp2클래스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</u></p> <p>⑪ <u>Cp2-F클래스 : 퇴직연금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</u></p> <p>⑫ <u>S-P클래스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</u></p>

		<u>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 3) 환매수수료	클래스 추가에 따른 환매수수료 기재	<u>Cp-E, Cp2, Cp2-F,S-P : 환매 수수료 없음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	클래스 추가	<u>Cp-E, Cp2, Cp2-F,S-P : 판매 수수료 및 환매수수료 없음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클래스 추가	<u>Cp-E, Cp2-F, S-P 클래스의 보수 및 비용 기재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.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 기재	<u>다르의 명칭변경 및 클래스 추가 내용 반영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. 이익 배분	1)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에서 평가이익을 차감한 나머지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. 다만,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. 2)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수익증권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이익 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u>투자신탁계약 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</u>	<u><삭 제></u> 1)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와의 별도의 약정에 따라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

	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(이하 "상환금 등")을 받을 수 있습니다.	습니다. <u>다만,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클래스 추가	<u>클래스 추가에 따른 퇴직연금 과세제도 기재</u>